

대구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

의안 번호	6420
----------	------

제출연월일 : 2022. 9.

제 출 자 : 대구광역시장

1. 폐지이유

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대구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 사업을 일반회계에서 통합 운영하기 위해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「대구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」를 폐지함
- 나. 이 조례는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함(안 부칙 제1조)
- 다. 대구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에 관한 경과조치(안 부칙 제2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5조 등(※붙임)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 의 : 예산담당관과 합의되었음
- 라. 기타사항
 - 1) 입법예고
 - 가) 예고기간 : 2022. 8. 1. ~ 8. 22.(21일간)
 - 나) 예고결과 : 의견없음
 - 2) 규제심사 : 해당없음
 - 3) 부패영향평가 : 해당없음
 - 4) 갑질영향심사 : 해당없음
 - 5) 성별영향평가 : 해당없음
 - 6) 비용추계서 : 미첨부사유서 붙임

대구광역시조례 제 호

대구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

대구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폐지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의 「대구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」에 따라 지원된 대구광역시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의 융자상환에 따른 원금과 이자 및 지원사업의 집행잔액과 이자는 만기 상환 시 또는 전액 반납 시까지 일반회계로 세입 조치한다.

제3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대구광역시 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제1항제1호를 삭제한다.

② 대구광역시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1호를 삭제한다.

③ 대구광역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2. 「대구광역시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 및 운용 조례」에 따라 융자하는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원하는 경우

④ 대구광역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2호를 삭제한다.

⑤ 대구광역시 지식산업센터 건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③ “금융지원”이라 함은 「대구광역시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 및 운용 조례」 제5조에 따른 자금지원을 말한다.

⑥ 대구광역시 협동조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3호를 삭제한다.

관 계 법 령

□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

제15조(기금의 통합·폐지)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례의 폐지 및 제정·개정 절차에 따라 이를 폐지하거나 다른 기금과 통합하여야 한다. 다만,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설치된 기금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이의 폐지 또는 통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

1. 기금 설치의 목적을 달성한 경우
2. 기금 설치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
3. 「지방재정법」에 따른 특별회계와 기금 간 또는 기금 상호간에 유사하거나 중복되게 설치된 경우
4. 그 밖에 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
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기금의 폐지 또는 통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.

대구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재정수반 요인 : 해당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대구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5항제1호(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)에 해당함

3. 미첨부 사유

이 조례안은 폐지조례안으로 조례 폐지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이 없으므로 미첨부 1호 사유에 해당함

4. 작성자 : 경제국 경제정책관 서정혜